

「202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소재 뿌리업종 관련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지원수요에 따른 선택적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력 확보와 매출도약 지원으로 자발적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하오니 중소·중견 뿌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개요

- 사 업 명 :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 공고/접수기간 : 2022년 5월 16일 ~ 31일 18:00까지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 기타 참여 자격요건은 ‘Ⅲ.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참조
- 지원내용 :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기술개발, 시제품, 사업화, 근로환경개선)
-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II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지원

구 분	채용약정 인원	지 원 금 액	비 고
지원금액	1인	15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부담금 20%
	2인	30백만원 이내 지원	이상 구성필요
사업비 구성 예	사업비 3,750만원 = 정부지원금 3,000만원(80%) + 기업부담금 750만원(20%)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 지원내용 :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

- 지원범위별 공급기업을 신청기업이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구분	지원 범위	지원 가능 항목
기술 지원	시험분석 지원	· 제품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비 지원 ex) 인장시험, 피로시험, 염수분무시험 등 * 국내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등의 시험비만 인정
시제품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위탁비용 지원
사업화	디자인개발	· 제품, 포장, CI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지원
	홍보영상 및 사진	· 회사 및 제품 홍보동영상, 사진촬영 및 제작비 지원
	박람회 참가	· 국내 전시회 참가비, 참가부스 설치비 지원
근로 환경 개선	근로	공사비용 지원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환경 개선	렌탈비용 지원 ·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작업장 안전 확보 지원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헬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비용 지원	

* 시제품 제작은 'I-Mate(www.i-mate.or.kr)' 에서 공급기업 검색 가능

III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 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뿌리기업 자격요건 (아래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에 포함되는 뿌리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 참여기업 자격요건 (아래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

1. 매출액 감소율 :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20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18년, 2019년, 2020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2. 고용감소율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평균이 2019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5% 이상 감소
3. 위기산업군 :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24XXX, 30XXX) 및 생산 제품 고려

○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

1.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 필수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 자
4.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주40시간 월 최저임금기준)
5.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자
6.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동일기업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근로자
8. 신규채용 약정인원 중 1명 이상은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용서비스 등록자료(워크넷 등록 구직자 및 재직자)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및 재직자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 제약 없음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9.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규 채용한 약정인원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1.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 3년 동안 평균매출액 대비 최소 5%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직전 3년 동안 평균고용률 대비 최소 5% 이상 고용이 감소한 기업
 - 위기산업군 :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3.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6.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7.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8. 2021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9.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20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11.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2. 『2022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에서 '뿌리기업 기업성장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3.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14.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5.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16.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17.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18.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9.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IV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접수기간 : 2022년 5월 16일 ~ 31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No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1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부	[서식 2]
	3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서식 3]
	4	공장등록증 1부 (사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9, '20, '21) 각1부 (사본) ※ '19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기간 : 2019.12.31. ~ 2019.12.3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사본)	
	7	표준재무제표('19, '20, '21) 각1부 (사본) ※ 공고 마감일 기준 '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8, '19, '20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8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9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본)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1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선택 (해당사)	12	서류평가 가점 서류 각1부 (사본), 최대 1개에 대해 3점 인정 -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현장평가 가점 서류 각1부 (사본), 최대 2개에 대해 10점 인정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기업(비전기업, 유망 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	

- 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1 모집공고	•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자격심사/서류평가	• 기업 자격심사 및 서류평가 진행 (평가위원 1인)
3 현장평가	• 기업 현장평가 진행 (평가위원 2인)
4 원가분석	•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
5 협약	•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6 사업수행	•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수행
7 최종평가	• 결과보고서 및 사업성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및 채용 확인
8 지원금지급 및 사후관리	• 채용성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채용약정 인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선정방법

- 신청내역 및 필요성, 공급기업 선정내역,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조정 위원회’의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적절성 심사, 참여기업 선정 (총사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자격심사/서류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

- 자격심사/서류평가 : 외부전문가(1인)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신청자격 요건 해당 여부 평가(결격사유 점검 등)
 - 자격심사 : 모든 자격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적합
 - 서류평가 :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 현장평가 : 외부전문가(2인)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비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 조정 및 확정,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최종 선정

※ 동점 시 선정 기준 : ‘①지원시급성 ②사업계획 적정성 ③사업비 적정성’ 고득점 순

평가지표		평가방법	비고
자 격 심 사	뿌리기업 여부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뿌리기업 업종분류 번호	적/부
	참여대상 기업여부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매출액 감소율 :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 고용 감소율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 위기산업군 :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24XXX, 30XXX) 및 생산 제품 고려	적/부
	상시 근로자수	■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시 적합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적/부
	기업소재지	■ 기업소재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천(제조시설 기준)일 경우 적합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준	적/부
	부채비율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면 적합(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부적합) - 20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0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가능	적/부
	기업규모	■ 2021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적합 - 20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0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가능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적/부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적/부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적/부
	자격심사 항목 모두 적합 시 통과		통과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서류평가	업력유지	■ 뿌리기술 활용 업력 평가(사업자등록증 기준)	10점
	매출액	■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 평균 대비 2019년 매출 비율 - 표준재무제표 기준, '19년 대비 '19년, '20년, '21년 매출액 평균	10점
	이자보상 배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 표준재무제표 기준, '19년, '20년, '21년 평균	10점
	매출액 영업이익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기준, '19년, '20년, '21년 평균	10점
	유형자산 증가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유형자산 증가여부 - 표준재무제표 기준, '19년 대비 '19년, '20년, '21년 유형자산 평균	10점
	연구개발 비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연구개발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기준, '19년 대비 '19년, '20년, '21년 유형자산 평균	10점
	고용증가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고용증가율(증가인원/전체 직원수) - '19년 말 상시 근로자 수 대비 '19년, '20년, '21년 말 상시근로자 수 평균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	20점
	청년근로자 장기근속률	■ 5년 이상 장기근속 여부(39세 이하 청년 5년 이상 근로자수/전체 직원수) - '21년 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 - 업력기준 5년 미만 사업장은 최고점처리	20점
	가 점	■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여부(최대 1개에 대해 가점 3점 인정) -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 지역위기산업(가점 3점) - 뿌리산업 중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항목별 배점은 서류평가표 참조)		100점 +α
현장평가	사업적정성	■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절성/실행가능성	40점
	지원시급성	■ 사업 후 기대효과	20점
	사업비적정성	■ 공급기업 컨소시엄 적절성, 지원항목별 사업비 적절성	40점
	가 점	■ 가점 서류 1개당 5점, 최대 2개 10점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기업(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평가위원 2인의 현장평가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100점 +α

- 원가분석 : 제3의 원가분석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총액 대비 원가분석 결과가 $\pm 10\%$ 미만 시 통과(원가분석 결과가 사업비 대비 $\pm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원가분석비용 ITP 부담)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ITP ↔ 주관기업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 최종평가 및 채용확인

- 최종평가 : 외부전문가(2인)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적절성, 수행목표 달성수준 등을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사업 성공, 미만일 경우 사업 실패 (채용약정 미준수시 사업 실패)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최 종 평 가	사업비 집행 적절성	■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정성평가	25점
	수행목표 달성수준	■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25점
		■ 사업 달성도	25점
		■ 채용약정 신규인력 운용의 적절성	25점
	평가위원 2인의 최종평가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100점

- 채용 확인 : 협약시작일로부터 협약종료일 내에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의 근로자 채용 확인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주 요 내 용
1	최종평가 (ITP→주관기업)	• 최종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 시 성공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제 실패
↓		
2	채용약정인원 채용확인 (ITP→주관기업)	• 채용약정인원 채용 확인 -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의 근로자 채용 확인
↓		
3	정산보고서 검토 (ITP→주관기업)	• 정산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액 확정 - 확정 지원금 통보
↓		
4	지원금 지급신청 (주관기업→ITP)	• 주관기업 지원금 지급신청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요청서, 주관기업 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		
5	지원금 지급 (ITP→주관기업)	• 주관기업으로 확정 지원금 지급

○ 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을 충분히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식파일은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참고

V 문의사항

-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연 락 처 : (Tel) 032-260-0693, 0694